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341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경윤, 김민식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기용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우영, 조상원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2017. 1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 주식회사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A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38,104,5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E 사이에 2018.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9,876,2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9,876,2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는 각 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보증계약'과 '제2 보증계약'이라고 하며 합쳐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각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E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보증기한변경)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1	2010. 12. 22.	810,000,000	2011. 12. 21. (2018. 12. 14.)	F은행	900,000,000
2	2015. 6. 19.	180,000,000	2015. 12. 18. (2018. 12. 14.)	G은행	200,000,000

2) 소외 회사는 2011. 1. 19. F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2015. 6. 19. G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그 후 각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한 역시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기한을 2018. 12. 14.로 연장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 행위

소외 회사는 2017. 12. 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66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의 처분 행위

- 1) E는 2013. 12. 30.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02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H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2017. 11. 13. 근저당권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각 마쳐주었다.
- 2) E는 2018. 3. 1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B에 양도하기로 하되, H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3) 2018. 4. 12. 피고 B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대위 변제

- 1) 소외 회사는 2018. 9. 19.부터 G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12. 15.부터는 F은행에 대한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2) 소외 회사가 F은행과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9. 2. 1. G은행에 대출원리금 182,343,215원을, 2019. 4. 30. F은행에 831,420,83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이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은행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3.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0. 1. 30. 매수인 I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8,104,5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갑 제16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 8, 9, 14,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당시 일정한 사유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원고는 F은행과 G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변제자로서 F은행과 G은행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대출금 채권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구상금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19. 2. 1. G은행에게, 2019. 4. 30. F은행에게 각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0. 12. 22.과 2015. 6. 19. 그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인정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소외 회사는 2011년 F은행으로부터 9억 원, 2015년 G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이후 그 각 대출 원금은 상환하지 못한 채 이자만 변제하면서 그 대출기한만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유예하여 왔으며, 아래 나.항에서 살피듯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였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7. 3. 30. J이 청구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18. 3.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결국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는 2018. 1. 24. K카드와 L은행에 대하여, 2018. 3. 17. M카드에 대하여, 2018. 3.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8. 4. 17. N카드에 대하여 각 카드 대금 연체를 하였고, 결국 2018. 9. 19.에는 제2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7, 8, 15호증의 기재, F은행, O은행, G은행,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12. 5.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 적극재산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12. 5.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제5, 6항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2019. 3. 22. 무렵의 시가는 310,689,2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7. 12. 5. 무렵의 시가가 이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5, 6항 부동산의 경우 2017. 12. 5.와 근접한 2018. 3. 20.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175,03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소극재산

2017. 12. 5.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인정된다

-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로 1,485,000,000원
- Q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949,925,117원
-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60,000,000원

-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금 채무 846,000,000원

- P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970,495,745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피고 A의 악의 추정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 역시 추정되고, 피고 A이 제출한 을가 제1 ~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A이 2017. 12.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A에 대하여 38,104,56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A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38,104,5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 B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9. 2. 1.과 2019. 4. 30.경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3. 14.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소외 회사의 채무상태와 그로부터 불과 4개월 가량이 지난 2018. 9. 19. 소외 회사가 G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 1)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 2) 갑 제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20. 2. 17.자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2021. 4. 30.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8. 3. 14.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776,766,900원인 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은행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40,000,000원, 피고 B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감정인 R에 대한 최초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2,40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R에 대한 최초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신고된 매매가액 2,400,000,000원을 그대로 비교사례로 사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그 계산 근거로 삼은 비교 사례가 객관적이지 않아 그대로 채용할 수 없어 2021. 4. 30.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40,000,000원(= 1,340,000,000원 + 7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 가액 776,766,900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E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E의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조수진, 판사 신철민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경기도 양평군 S 도로 80㎡

2. 경기도 양평군 T 도로 98㎡

3. 경기도 양평군 U 창고용지 812㎡

4. 경기도 양평군 U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14.84㎡

2층 77.7㎡

5. 경기도 김포시 V 대 377㎡

6. 경기도 김포시 V W호

경량철골조 경량출골조지붕

단층 화물창고 166.72㎡

7.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X, Y에 있는

Z건물 AA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B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40층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층 2,2 2.42

층 2,026.

층 606.76

2층 ,762,36

2층 ,42 ,67

2층 ,339.33

3층 4, 98.55

4층 2, 6.73

5층 ,882.59

6층 ,92 .52

7층 2, 46.52

8층 2, 33.36

9층 2, 33.36

0층 2, 46.52

층 2, 33.36

2층 2, 46.05

3층 ,774.57

4층 ,774.57

5층 2,23 .78

6층 2,243.26

7층 2,23 .78

8층 2,23 .78

9층 2,243.26

20층 2,23 .78

2 층 2,23 .78

22층 2,243.26

23층 2,23 .78

24층 2,23 .78

25층 2,243.26

26층 2,23 .78

27층 2,23 .78

28층 2,243.26

29층 2,23 .78

30층 2, 45.77

3 층 ,757.69

32층 ,746.2

33층 2,207.4

34층 2,2 8.88

35층 2, 72.77

36층 2, 72.77

37층 2, 46.92

38층 2, 33.76

39층 2, 33.76

40층 ,40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C

건물내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87.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X 공장용지 8,460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Y 공장용지 7,53 .8

대지권의 종류 : .,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 2. 35,99 .8분의 30.54

8. (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X, Y에 있는

Z건물 AA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B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40층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층 2,2 2.42

층 2,026.

층 606.76

2층 ,762,36

2층 ,42 ,67

2층 ,339.33

3층 4, 98.55

4층 2, 6.73

5층 ,882.59

6층 ,92 .52

7층 2, 46.52

8층 2, 33.36

9층 2, 33.36

0층 2, 46.52

층 2, 33.36

2층 2, 46.05

3층 ,774.57

4층 ,774.57

5층 2,23 .78

6층 2,243.26

7층 2,23 .78

8층 2,23 .78

9층 2,243.26

20층 2,23 .78

2 층 2,23 .78

22층 2,243.26

23층 2,23 .78

24층 2,23 .78

25층 2,243.26

26층 2,23 .78

27층 2,23 .78

28층 2,243.26

29층 2,23 .78

30층 2, 45.77

3 층 ,757.69

32층 ,746.2

33층 2,207.4

34층 2,2 8.88

35층 2, 72.77

36층 2, 72.77

37층 2, 46.92

38층 2, 33.76

39층 2, 33.76

40층 402.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D

건물내역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80.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X 공장용지 8,460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Y 공장용지 7,53 .8

대지권의 종류 : .,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 2. 35,99 .8분의 28.3 끝.

